

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2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(주)BNK투자증권  
(영문명) BNK Securities. Co.,Ltd  
(홈페이지) <http://www.bnkfn.co.kr>

본 점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259-4번지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4층  
:  
(전 화) 051-669-8000

대 표 이 사 : 김 병 영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기획부장  
(성 명) 장대현 (전 화) 02-2115-5122

작 성 자 : (직 책) 기획팀장  
(성 명) 이광재 (전 화) 02-2115-5071

(제5-5호)

### 단기차입금 증가결정

1. 단기차입내역	차입금액(원)	150,000,000,000	
	자기자본(원)	1,071,063,710,526	
	자기자본대비(%)	14.00%	
	대규모법인여부	여	
2. 단기차입금총액 변동내역(원)	차입 전	차입 후	
- 기업어음 (원)	1,000,000,000,000	1,000,000,000,000	
- 금융기관 차입 (원)	170,000,000,000	170,000,000,000	
- 당좌차월한도 (원)	-	-	
-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 (원)	-	-	
- 사모사채(만기 1년이하)(원)	-	-	
- 기타차입 (원)	1,000,000,000,000	1,150,000,000,000	
- 단기차입금 합계 (원)	2,170,000,000,000	2,320,000,000,000	
3. 차입목적	운영자금(단기 자금 유동성 확보)		
4. 차입형태	BNK금융지주로부터 Credit Line 개설		
5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2022.12.21.		
-사외이사참석여부	참석(명)	5	
	불참(명)	-	
-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여		
6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	부		
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본 차입금은 당사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전적으로 BNK금융지주로부터의 차입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.</li><li>- 상기 신규 차입한도 설정건은 현재 실제 약정을 체결하거나 차입금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,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약정 체결 및 차입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li><li>- 상기 자기자본은 2022.09월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.</li></ul>		

<기재상의 주의>

주1)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에 관한 결정이

있을 때 공시한다.

※ 본 공시서식에 따른 공시일 이전 1년간에 있었던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대한 누계금액을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에 기재한다.

- 주2)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(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)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(액면금액기준)을 말한다. 다만, 콜차입, 만기 7일 이하로 발행되는 기업어음(CP), 만기 7일 이하의 증권금융차입, 금융기관에 의한 무역금융·구매자금 대출,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(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 포함)은 단기차입금에서 제외한다.
- 주3) 자본잠식법인은 “자기자본”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한다.
- 주4) “자기자본 대비”에는 단기차입금 변동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한다.
- 주5) “차입형태”는 금융기관차입, 기업어음발행, 당좌개설, 당좌차월한도증액, 사모사채발행,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 등 해당 차입형태를 기재한다.
- 주6) “차입전일 현재”는 당해차입 이전의 단기차입금총액을 기재하고, “차입당일 현재”는 당해차입을 포함한 단기차입금총액을 기재한다.
- 주7) 상기 기재사항 외의 단기차입과 관련한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8) “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”는 당해 공시사항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따른 “대규모내부거래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또는 50억원이상)”를 기재한다.